

2020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3시 00분

2. 장 소 : 대학본부 2층 회의실

3. 개최기도 : 정원호의원

4. 참석현황 (정원 12명)

구성위원	참 석 자 명 단	불 참 자 명 단
교 원	장효순(간호학부교수) 한혜실(교수협의회의장) 김근곤(간호학부교수)	
직 원	최경숙(직원협의회의장) 정원호(직원노조위원장)	
학 생	최희정(총학생회장) 최정하(간호학부학생회장)	정세경(사회복지학부학생회장)
동문	이효실(예수병원 전 간호부장)	이순복(예수병원 간호부장)
대학발전기여자	송규근(전북대 교수)	장인균(기전여고 교장)
합계	9명	3명
참관인	배진희기획처장	

5. 안건

- 1) 2020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건
- 2)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3) 2020년 제 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자 선임 건

6.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을 하다.

전 회의록을 배포하고 전 의원들에게 확인한 후 접수하다

장 효 순	정 원 호	최 정 하	김 종 인
-------	-------	-------	-------

7. 회의내용

1) 제 1호 의안 : 2020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배진희기획처장이 준비된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2020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아 래-

2020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 (안)		
본예산 : 6,357,260,000원		추가경정예산 : 6,701,594,252원
		추경요구액 : 344,334,252원
수입 주요변동 요인		
증가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지원금	206,250천원
	2019학년도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60,386천원
감소	편입생(의료양성) 미충원 6명	43,000천원
	기숙사 관리비(코로나로 인한 중간 퇴사)감소	20,000천원
지출 주요 증가요인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기관 대응금		96,000천원
교직원 보수 여건 변동 발생		38,000천원
시간강의료 증가(전임교원 미채용으로 인한 강사로 증가)		20,570천원
발열체크기 구매		5,000천원
수해복구 비용		30,000천원
온라인 교육컨텐츠 환경 선진화 비용		7,000천원
장애 평가 대비		2,000천원
코로나 특별장학금		47,000천원

- 의장이 2020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을 요청 하니 송규근의원의 동의와 김근곤의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의결 하다.

2) 제 2호 의안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

-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동인간사가 준비된 자료를 배포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아 래-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 설치등)②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된다 라고 법이 개정되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되어, 현재 우리 대학 평의원 구성단위에 '조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부인사 1인을 감원하고 '조교' 1인을 증원하는 것임. *주요개정 내용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포함하고 관련하여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2조(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등) ②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 훈순	정 원호	최정하
		김동인

2018.2.27.> 1. 교원 3명<개정 2018.2.27.> 2. 직원 2명 3. 학생 3명<개정 2018.2.27.>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개정 2018.2.27., 2020.8. > 1. 교원 3명<개정 2018.2.27.> 2. 직원 2명 3. 조교 1명<신설 2020.8. > 4. 학생 3명<개정 2018.2.27.,2020.8. > 5. 동문 2명<개정 2020.8.>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개정 2020.8.>	구성하여 된다고 법이 개정되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되어, 구성단위에 '조교'를 포함하기로 함. -외부인사 1인 감원하고 조교 1인을 증원
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전임 교원 혹은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이어야 한다. ② 학생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 이어야 한다. ③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전임교원 혹은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이어야 한다. ② 조교 평의원은 재직증인자로 한다.<신설 2020.8. > ③ 학생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 이어야 한다. <개정 2020.8.> ④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구성단위 '조교' 포함으로 인한 관련 조항 개정
제4조(선임)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교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2.27.> 2. 직원은 학칙 제85조2의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2.27.> 3. 학생은 총학생회 및 학부 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2.27.> 4. 동문은 총동창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5.1.>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학무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전문가, 법률전문가, 공무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2.27.>	제4조(선임)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교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2.27.> 2. 직원은 학칙 제85조2의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2.27.> 3. 조교는 조교회의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8. > 4. 학생은 총학생회 및 학부 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7.,2020.8.> 5. 동문은 총동창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2020.8.>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학무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전문가, 법률전문가, 공무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7.,2020.8.>	구성단위 '조교' 포함으로 인한 관련 조항 개정
제5조(자격상실) ① 교원 및 직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교원과 조교 및 직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0.8.>	구성단위 '조교' 포함으로 인한 관련 조항 개정
	부 칙 2. 제 2조(구성) 3에 해당하는 '조교' 위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평의원 중 조교 위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의장이 본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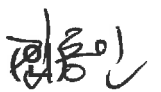
3) 제 3호 의안 : 2020년 제 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자 선임

- 의장이 본 회의록에 대한 확인서명자의 추천을 요청하니 장효순의원, 정원호의원, 최정하의원 이상 3인을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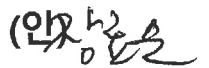
장효순	정원호	최정하	김종민
-----	-----	-----	-----

8. 폐회선언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김근곤의원이 동의하고 한혜실의원이 제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 하니 15시 45분 이었다.

기록 : 김동인간사 

확인 : 한혜실의원 

장효순의원 (인) 

김근곤의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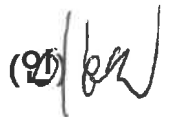
최경숙의원 (인)

정원호의원 (인) 

최희정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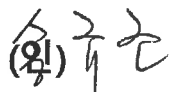
최정하의원 (인) 

정세경의원 (인)

이효실의원 (인) 

이순복의원 (인)

장인균의원 (인)

송규근의원 

2020년도 4차 대학평의위원회 명단(참석확인)

-일시 :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3시 00분

-장소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연번	성명	구분	비고	참석확인(서명)
1	한혜실	교원	교수협의회장	한혜실
2	장호순	교원	간호학부교수	장호순
3	김근곤	교원	간호학부교수	김근곤
4	최경숙	직원	직원협의회장	최경숙
5	정원호	직원	직원노조위원장	정원호
6	최희정	학생	총학생회장	최희정
7	최정하	학생	간호학부학생회장	최정하
8	정세경	학생	사회복지학부학생회장	
9	이효실	동문	예수병원 前 간호부장	이효실
10	이순복	동문	예수병원 간호국장	
11	장인균	외부인사	기전여고 교장	
12	송규근	외부인사	전북대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송규근